

의안
번호

2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8. 26.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호

다. 제출일자 : 2022. 08. 17.

라. 회부일자 : 2022. 08. 18.

2. 제안이유

-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1인가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라.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8조)
- 마. 1인가구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 의 견 : 의견 없음.
- 라.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및 미반영사유
인권 영향 평가	제4조제3항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타 구처럼 (예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실태조사를 따로 구체적으로 명기 바람.	반영	제4조제3항 삭제, 제5조(실태조사) 신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패 영향 평가	제6조제5항 지원대상 ‘공유주택’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지원 대상 불분명	반영	제2조(용어 정의)제5항 ‘공유주택’ 용어의 정의 추가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절차, 관리·감독, 위법행위 시 제재 규정 없음	반영	위탁의 개념 정의 및 절차, 관리·감독, 수탁기관 위법행위 제재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 또는 관련 조례 준용 명시로 아래사항 추가 → 위탁의 절차,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3항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탁 사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탁기관의 무분별한 사무위탁 가능	미반영	제8조에 “위탁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기재(추가)되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관

5. 검토의견

가. 제정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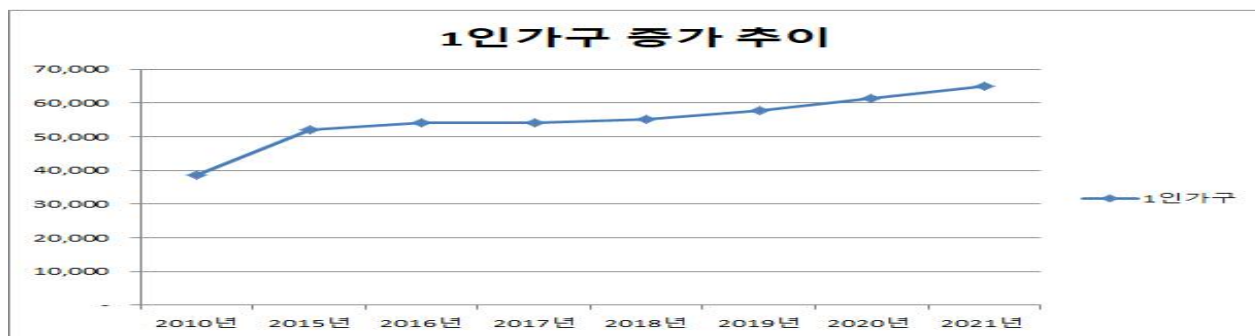
- 본 제정안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가족분화로 인해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34.9%, 성북구는 전체 가구 수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성북구의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비교 1인가구 수 현황 >

구분	전국	서울	성북구	비고
전체가구 수	2,092만가구	398만가구	18만가구	
1인가구 수	664만가구	139만가구	61천가구	
1인가구 비율	31.7%	34.9%	34.2%	

< 최근 성북구 1인가구 변동 추이 >



< 출처: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1인가구 비율 통계자료 참조 >

- 1인가구의 증가는 주거, 문화,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본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1인가구', '1인가구 정책'과 '사회적 가족도시'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안 제4조~제5조)

- 안 제4조는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뿐만 아니라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효과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관계 형성, 돌봄지원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와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8조)

- 안 제8조는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저출산, 고령화, 비혼 등 다양한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은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하다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일자
1	금 천 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7.05.15.
2	은 평 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8.11.01.
3	서 초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8.12.13.
4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4.02.
5	광 진 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5.19.
6	마 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9.24.
7	성 동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09.16.
8	중 랑 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09.29.
9	강 동 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09.29.
10	관 악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11.11.
11	동 작 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12.09.
12	용 산 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12.31.
1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05.04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